

## 공제가입증서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은 공제계약자와 해당 공제약관에 의해서 공제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 이 증서를 드립니다.”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이사장



(우: 222 - 12)

인천광역시 남구 인하로 100

인하공업전문대학

인하공업전문대학 총장

### 반드시 확인하셔야 할 사항

- 공제가입증서(공제증권)의 내용이 약관과 일치하지 않거나 잘못된 경우, 또는 각종 전의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안전원으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공제급여의 청구 및 계약서 사항을 변경하실 때에는 공제가입증서(공제증권)가 필요하오니 소중히 보관하여 주십시오.
- 공제급여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다음서류를 갖추어 저희 안전원으로 청구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① 청구서(안전원 양식)
  - ② 사고증명서(진료비 계산서, 사망진단서, 장애진단서, 입원치료확인서, 통원치료확인서, 의사처방전(처방조제비) 등)
  - ③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 ④ 연구주체의 장의 사고경위서 등

일반	공제가입기간	2023-03-28 00시 ~ 2024-03-27 24시		
	공제가입금액	유족급여 : 200 백만원 장해급여 : 200 백만원 요양급여 : 2,000 백만원 장의비 : 10 백만원 입원급여 : 5 만원		
	가입인원 수	7,037 명	총 공제료	9,730,030 원

계약자	계약자명		인하공업전문대학 총장		학교 (기관)명	인하공업전문대학		
	연락 처	전화	032-870-2039			설립구분	사립	
		팩스	032-870-2481				소재지	인천광역시 남구 인하로 100 인하공업 전문대학

공제가입내역

전문대학	대학생	공간정보빅데이터과	전문대학	대학생	관광경영학과
전문대학	대학생	관광경영학과(심화)	전문대학	대학생	비서학과
전문대학	대학생	산업디자인학과	전문대학	대학생	정보통신공학과
전문대학	대학생	정보통신공학과(심화)	전문대학	대학생	컴퓨터시스템공학과(심화)
전문대학	대학생	컴퓨터시스템과	전문대학	대학생	컴퓨터정보공학과(심화)
전문대학	대학생	컴퓨터정보과	전문대학	대학생	패션디자인학과
전문대학	대학생	항공경영학과	전문대학	대학생	항공운항과
전문대학	대학생	호텔경영학과	전문대학	대학생	건설환경공학과
전문대학	대학생	건설환경공학과(심화)	전문대학	대학생	건축학과
전문대학	대학생	건축학과(심화)	전문대학	대학생	기계공학과
전문대학	대학생	기계설계공학과	전문대학	대학생	메카트로닉스공학과
전문대학	대학생	스마트기계설계과	전문대학	대학생	실내건축학과
전문대학	대학생	실내건축학과(심화)	전문대학	대학생	자동차공학과
전문대학	대학생	자동차공학과(심화)	전문대학	대학생	재료공학과
전문대학	대학생	전기공학과	전문대학	대학생	전자공학과
전문대학	대학생	조선기계공학과	전문대학	대학생	첨단스마트자동차과
전문대학	대학생	항공기계공학과	전문대학	대학생	항공기계공학과(심화)

\* 이 공제증권은 포괄증권으로서, 공제가입기간 중 피공제자(연구활동종사자)의 인원이 증감되었을 때에는 저희 안전원에 통지하시거나 직접 전산 접속 후 조정하셔야 하며, 그러한 사유로 본 공제증권을 재발급하지 않습니다.



1. 연구활동종사자 가입인원 변동에 따른 인원·명단 통보 및 자동담보에 관한 사항

1-1. 대학(원)생의 경우 정기적(매학기)으로 가입인원을 안전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연구(보조)원의 경우 인원 변동 시 명단을 안전원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1-2. 통보지체로 학적(명단)에 없는 연구활동종사자 사고자 발생 시

1-2-1. 대학(원)생은 학과별 전체인원을 가입한 학과에 한하여 추가 학적등록생의 경우 본 공제에 자동담보되며 휴학이나 졸업 등으로 학적에서 제외된 경우 담보에서 자동 제외됩니다.

※ 단 학과별 부분인원(명단)으로 가입 시 사고발생 전 제출된 명단에 한하여 자동 담보함.

1-2-2. 연구(보조)원 중 신규채용 된 인원의 경우 사고발생 전 제출된 명단에 한하여 자동담보하며 기존 인원과 변경되어 채용된 경우 총장·기관장 공문으로 증명 할 경우 보상이 가능합니다.

1-3. 대학원 진학예정자(일시적 학적상실자)에 대한 보장기간 확대

1-3-1. 졸업 후 학적에서 제외된 연구활동종사자가 동일학교 진학 예정자로서 연구활동을 지속하는 경우 안전원은 졸업일 다음 날 부터 입학일 전일까지 기존 계약의 변경없이 보장합니다.

1-3-2. 다만 졸업일 다음 날부터 입학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계약이 종료될 경우 안전원은 더이상 보장하지 않습니다.

1-3-3. 해당 대학원 진학예정자(일시적 학적상실자)에 대한 공제료 환급 또는 정산이 이루어질 경우 안전원은 더이상 보장하지 않습니다.

2. 연구활동종사자 가입인원 변동에 따른 공제료 정산에 관한 사항

2-1. 대학생·대학원생·연구원·연구보조원 각각 인원의 10% 이하 증감이 있을 시에는 공제료를 정산하지 아니하며 10%를 초과 한 경우 증감된 전체인원에 대하여 정산할 수 있습니다.

2-2. 정산일은 계약 만료일 기준으로 하며 정산일 기준 공제가입 대상자 현황을 본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공제료는 별도의 약정이 없으면 공제기간 시작일 이전에 입금하여야 하며 입금이 지연될 경우 안전원은 공제료 입금 시간부터 보상이 가능합니다.

※ 이 공제증권은 포괄증권으로서, 공제가입기간 중 피공제자(연구활동종사자)의 인원이 증감되었을 때에는 저희 안전원에 통지하시거나 직접 전산 접속 후 조정하셔야 하며, 그러한 사유로 본 공제증권을 재발급하지 않습니다.